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99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이양수・서천호・이인선

최형두 · 박덕흠 · 조경태

김소희 · 정희용 · 배준영

이종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와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의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가 벌칙 조항에는 있으나, 금지행위 조항에는 없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시설물 제거 또는 행위중지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기에 벌칙을 완화하여 법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와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의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를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조항에 포함시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 장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조정하여 법의 형평성과 합리성 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44조 등).

법률 제 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22조제1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자
- 3.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설사업을 한 자

제4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5조 중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자
- 2.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원상회복 등) ① 관리청은	제23조(원상회복 등) ①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	<u>당하는</u>
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	
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u><신 설></u>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u><신 설></u>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
	<u>업을 한 자</u>
<u><신 설></u>	3.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
	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
	<u>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4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	<u><삭 제></u>

<u>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u> <u>업을 한 자</u>

제45조(벌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 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먹	강하는			

- 1.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 업을 한 자
- 2.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 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